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2-16

제출년월일 : 1993. 3.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농어촌진흥공사가 추진하는 농가의 영농규모 적정화 사업의 시행계획에 의하여 전업농 육성대상자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세제혜택 지원하기 위함.

주요골자

가. 불균일과세대상

농어촌진흥공사가 추진하는 농가의 영농규모적정화 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전업농 육성대상자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취득하는 농지

나. 면제세목 : 취득세, 등록세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

기타 참고자료 (별첨)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을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원하기 위하여"를 "지원하고 농가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조중 "작성된 계약서에"를 "작성된 계약서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와 농어촌진흥공사간의 농지매매시에 작성된 계약서에"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에 이미 전업농육성대상자와 농어촌진흥공사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농지를 취득·등록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